

# I 브라운스톤 동선 입주자모집공고 I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 도시개발과-3915(2008. 03. 31)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7가 32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지하2~지상15층 4개동 총 194세대 중 일반분양 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 11세대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 택 형 (㎡)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자분	총 수	층 별	공 급 세대수	분 양 가 격				
				세대별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비					건 축 비	계			
				전 용	주거공용	소 계											
민	21871-01	2008000377 (01)	147.22	114.97	32.25	147.22	61.33	208.55	63.55	15		1층	2	259,016	310,877	569,893	
												2층	1	266,975	320,429	587,404	
												3층	1	272,541	327,110	599,651	
												기준층	8	278,512	334,277	612,789	
	21871-02	2008000377 (02)	116.94	84.96	31.98	116.94	45.33	162.27	50.48	15			1층	2	196,597	235,960	432,557
													2층	4	202,939	243,572	446,511
													기준층	6	211,395	253,721	465,116
													1층	1	191,786	230,186	421,972
	21871-03	2008000377 (03)	112.86	84.96	27.90	112.86	45.33	158.19	48.72	12~15			2층	1	197,962	237,598	435,560
													기준층	3	203,268	243,968	447,236
													1층	2	137,367	164,872	302,239
													2층	2	141,799	170,190	311,989
영	21871-04	2008000377 (04)	89.18	59.95	29.23	89.18	31.98	121.16	38.50	12~15			3층	2	144,753	173,736	318,489
													기준층	14	147,707	177,282	324,989
													최상층	2	165,432	198,555	363,987
													1층	1	129,685	155,652	285,337
	21871-05	2008000377 (05)	83.29	59.96	23.33	83.29	31.98	115.27	35.96	15			2층	2	133,869	160,673	294,542
													3층	2	136,658	164,020	300,678
													기준층	16	139,446	167,368	306,814
													최상층	2	153,391	184,105	337,496
	21871-06	2008000377 (06)	82.89	59.96	22.93	82.89	31.98	114.87	35.78	12			1층	2	130,339	156,437	286,776
													2층	2	134,544	161,483	296,027
													3층	2	137,347	164,847	302,194
													기준층	16	140,150	168,211	308,361
												최상층	2	156,967	188,397	345,364	

(면적단위 : ㎡, 금액단위 : 천원)

주 택 형 (㎡)	층 별	총분양금액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입 주 시)
			1회 (계약시)	2회 (2008. 05. 10)	1회 (2008. 10. 10)	2회 (2009. 02. 10)	3회 (2009. 06. 10)	4회 (2009. 10. 10)	5회 (2010. 02. 10)	6회 (2010. 06. 10)			
147.22	1층	569,893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56,990	113,973
	2층	587,404	58,740	58,740	58,740	58,740	58,740	58,740	58,740	58,740	58,740	58,740	117,484
	3층	599,651	59,970	59,970	59,970	59,970	59,970	59,970	59,970	59,970	59,970	59,970	119,891
	기준층	612,789	61,280	61,280	61,280	61,280	61,280	61,280	61,280	61,280	61,280	61,280	122,549
	1층	432,557	43,260	43,260	43,260	43,260	43,260	43,260	43,260	43,260	43,260	43,260	86,477
116.94	2층	446,511	44,650	44,650	44,650	44,650	44,650	44,650	44,650	44,650	44,650	44,650	89,311
	기준층	465,116	46,510	46,510	46,510	46,510	46,510	46,510	46,510	46,510	46,510	46,510	93,036
	1층	421,972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84,372
	2층	435,560	43,560	43,560	43,560	43,560	43,560	43,560	43,560	43,560	43,560	43,560	87,080
	기준층	447,236	44,720	44,720	44,720	44,720	44,720	44,720	44,720	44,720	44,720	44,720	89,476
89.18	1층	302,239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60,479
	2층	311,989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62,389
	3층	318,489	31,850	31,850	31,850	31,850	31,850	31,850	31,850	31,850	31,850	63,689	
	기준층	324,989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64,989
	최상층	363,987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36,400	72,787
83.29	1층	285,337	28,530	28,530	28,530	28,530	28,530	28,530	28,530	28,530	28,530	28,530	57,097
	2층	294,542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29,450	58,942
	3층	300,678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30,070	60,118	
	기준층	306,814	30,680	30,680	30,680	30,680	30,680	30,680	30,680	30,680	30,680	30,680	61,374
	최상층	337,496	33,750	33,750	33,750	33,750	33,750	33,750	33,750	33,750	33,750	33,750	67,496
82.89	1층	286,776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57,336
	2층	296,027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29,600	59,227
	3층	302,194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30,220	60,434
	기준층	308,361	30,840	30,840	30,840	30,840	30,840	30,840	30,840	30,840	30,840	30,840	61,641
	최상층	345,364	34,540	34,540	34,540	34,540	34,540	34,540	34,540	34,540	34,540	34,540	69,044
공 정 율													

• 평형 환산 방법

평형환산방법	147.22㎡	116.94㎡	112.86㎡	89.18㎡	83.29㎡	82.89㎡
㎡ × 0.3025 또는 ㎡ ÷ 3.3058	(구)44평형	(구)35평형	(구)34평형	(구)26평형	(구)25평형	(구)25평형

## ☐ 공급내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당사가 적의 조정에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치세도 포함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체내 상가)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보육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걸리자의 건축공정 확 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단, 대금인상신청자 또는 본인외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은 사용종결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액 10%에 해당하는 잔금 은 사용종결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2002. 09. 06부터 시행)로 지정되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주택투자지역(2005. 06. 30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됨.
- 사업주체가 정관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를 포함한다)를 선택하는 경우는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입주계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총별 분양가를 산정함)단,101동 1호라인, 102동 1호라인, 103동 2호라인은 12층이 최상층 층수임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재산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전담부담 시 정산할 예정임.(단,재산세는 분리과세기준)
- 세대별 대지자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 공부정리절차 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또한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한 주택형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02. 9. 3 및 2002. 10. 29)에 따라 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자격제도가 적용됨.    ※ 세대별 대지자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지적청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 별도)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주 택 형	확 장 범 위	세대당 금액(VAT 별도)
147.22㎡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4	18,431,530
116.94㎡	거실, 침실1, 침실3	13,693,290
112.86㎡	침실1, 침실2, 주방	10,592,010
89.18㎡	거실, 침실1, 침실3, 주방	13,786,110
83.29㎡	침실1, 침실3, 주방	10,249,720
82.89㎡	거실, 침실1, 침실3, 주방	14,352,780

(단위 : 원)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공급금액과 별도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에 의해 부담되며,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재 세대의 기본 품목을 같은 가격임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준공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자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인 세대별로 행위신고(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구조 변경 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 인터넷·KB모바일 청약 신청 서비스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 용 대 상	인 터 넷	- 제1, 2순위 <span> </span> : 청약자격 1, 2순위에 해당하는 분    - 3순위 <span> </span> : 청약자격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KB모바일	- 제1, 2순위 <span> </span> : 청약자격 1, 2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에 접속
	인 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 ⇒ 인터넷 청약	
	KB모바일	- SKT <span> </span>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span> </span>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구 분	112.86㎡	83.29㎡	계
세 대 수	1 세대	7 세대	8 세대

• 특별공급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계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분 (무주택세대주)  
• 특별공급세대 : 전용 85㎡ 이하 공급규모 86세대의 10% 이내로 총 8세대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4. 07 (월) (10:00 ~ 15:00) / 당사 견본 주택  
• 동·호수 추정일시 및 장소 : 2008. 04. 07 (월) 16:00 / 당사 견본 주택(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자합의 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량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 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3. 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통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장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 1부 <span> </span>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격(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span> </span>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②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③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포함되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증·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한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자인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특별공급에도 재첨될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2. 3자녀 특별공급(건설량의 3% 범위 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3. 3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각 각 공급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입산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 순위 배정표에



- 당 주택부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 이후 가입자에 한함),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제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1항)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결과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4.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 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가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당첨자표표	
민	1순위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점제<span> </span>: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li> <li>추첨제<span> </span>: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li> <li>*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li> <li>*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li> <li>*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ul>	가주구분	2008. 0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접수장소<span> </span>:</li></ul> <p>인터넷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발표일시</li></ul> <p>2008. 04.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청약자측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일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 <li>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li> <li>*19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자측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재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장소<span> </span>:</li></ul> <p>당사 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li> <li>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 초과 주택에 한함)</li> <li>청약자측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재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li></ul>					

#### \*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유주택자 청약 제한

순 위	가 점 제	추 첨 제
1 순 위	1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2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2 순 위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
3 순 위	-	-

-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 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신청은 불가합니다.[노약자, 장애우 청약신청 가능시간 : 09:30~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 청약신청 시 유의 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Banking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가점접수 신청기준표

가 점 항 목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3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li></ul>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 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 주민등록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관계증명서</li></ul>
		3명	20	-	-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	-	-	

\* 제11조의 2 제3항, 제21조 제3항, 제5항, 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재순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감점 신청기준

구 분	감 점 항 목	소유 주택수	감 점 점 수
①	제6조 제 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점 항목별 적용 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 민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 일자(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인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 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자본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로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사 사업자로 등용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소속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용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기이거나 주택이 멸실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신청사자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 포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자본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장기보유 특례]
- 1.(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민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2.(현재) 무주택자 종전제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경과 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측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면적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마다 횡수에 관계없이 면 적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변경한 분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자측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94. 8. 15이전 청약자측에 가입한 재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재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 신청접수방법

- 공 통
  - 총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1순위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1순위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3순위
  - 종전제도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각 지역별,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85㎡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되 서울특별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서울특별시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서울특별시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에에게 공급함.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처음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공급신청 시 구비사항(은행 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택공급신청서(1·2순위<span> </span>: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span> </span>: 국민은행 비치)</li> <li>·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정(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li> <li>·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span> </span>: 주민등록등·초본 등(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li></ul></li> <li>·청약 신청금(3순위에 한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약자의 인감증서 1통 (용도<span> </span>: 주택공급신청 위임용)<span> </span>: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영인증서)이기에 관한 증명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감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 대리신청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감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 <li>-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주민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ul></li></ul>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신청 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단, 거주지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신청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이상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200만원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08. 04. 18)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대상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 ① 구비서류
  - ① 주택공공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② 주민등록증
      - ③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 제3차 대리환불 시 추가 구비사항
  - ① 상기 환불 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서 1명(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
  - ②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종된 서류으로 공공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③ 제3차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나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단, 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정계좌로 이체신청을 통해 입금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에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차위로 결정함</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신청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지등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정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li> <li>- 전용면적 85㎡ 이하<span> </span>: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정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li> <li>- 전용면적 85㎡ 초과<span> </span>: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정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li></ul>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동일일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향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접면적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접면적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li> <li>• 입주자 선정 시 주택행방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확정시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에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동·호·호수를 배정행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li> <li>•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li></ul>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정당 당첨자) : 2008. 4. 22(화) ~ 2008. 4. 24(목), (3일간, 시간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건본주택(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신청 전신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증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좌간 내 계약금 또는 일반 공약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납부계좌

납 부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국민은행	450901-01-277708	동선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환은행	630-006313-128		시행자 및 시공사 공동명의

- 상기 계좌는 시행자가 시공자에 위임한 계좌임

####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택공공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자의 인감도장</li></ul></li> <li>• 계약자(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자의 인감증서 1명(용도: 아파트 계약용)</li></ul></li> <li>•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li>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족관계증서 1통(이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자에 한함)</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사본 1부</li></ul></li></ul></li></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설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상 등본(가족대상등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공가격 증명행 등)</li></ul></li></ul></li></ul></li></ul></li></ul>
제3차 대리당첨 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차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자의 인감도장 1명(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li></ul></li></ul></li></ul></li></ul>

- 상기 제출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서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공신청 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계약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0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금액을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2005. 9. 5 가입자 포함)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해당될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 5년 이내 재등첨 여부규정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가 분리세대(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무주택여부 증명하여 부당 당첨자로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의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닐시 판명된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취소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 관리가 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 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 5항에 의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 상 인도받아 공공신청 및 고발조치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반 공약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행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전입연일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리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서해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신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1순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입주개시 전 특정입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임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적용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적용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 입주예정일 : 2010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증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 [보육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는 별도분양]

#### ■ 용지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지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증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증도금액을 불가하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증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연체료 기산됨)
- 당 사업자는 당사가 안내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분양금액의 40%대출이 가능하며,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 터 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자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li></ul>
	이용기간	• 2008. 04. 17 ~ 2008. 04. 26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ul>
전 화 (ARS)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번호 <span> </span> : 701)
	이용기간 및 시간	• 2008. 04. 17 ~ 2008. 0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ul>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span> </span> : Mbank 접속 → MB Sat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KTF, LGT<span> </span>: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당첨확인</li></ul>
	이용기간	• 2008. 04. 17 ~ 2008. 0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li></ul>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출일시	• 2008. 04. 17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품,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구 건교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 유의사항

- 주택공공신청서의 [주택액] 또는 [청원금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액(㎡)]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평형면적(㎡) X 0.3025 또는 평형면적(㎡) ÷ 3.3058]
- 주택공공신청서 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입안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측에서 청약금액으로 전한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증전보다 적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공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공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를 초과한다면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증금 및 이자등기는 입주당과 관계없이 별도 행정처리 사항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간담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규예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별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건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체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 이상의 대체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연충용 시공부보 또는 카디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판매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 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동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대가 속한 동, 층 및 항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내용은 형벌, 타일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공공법적과 대지법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청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해 상토 청산 처리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할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규예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단지 내 상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보육시설)은 별도의 분양대상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역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향후 각 단지/분구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대지/분할 분할은 각 분양면적 기준임
- 발코니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차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의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충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한다면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단실은 동·호수의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함.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수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 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상,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어린이 놀이대, 휴게소, 가로등, 벤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문고시설, 다목적실 등)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당 사업은 주택생산능동금제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 청약 및 계약 전 시범부지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원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별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색채,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축색그래피 및 시간 조경 등 외부사항은 인·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객차의 위치는 차·우 세대의 위치에 따라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분형 마감과 확장형 마감은 가구의 설치, 위치, 크기 등도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확장공사 관련 주택형별로 대피소가 존재하는 형태와 대피소가 없는 형태가 있으며 대피소 미설치의 경우 침실 발코니 측에 긴급 시 인접세대로 대피가능한 칸막이 벽을 설치하게 됨 이 경우 주택형별, 층별로 칸막이 벽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구획된 침실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시행인가도면 및 착공도면의 마감기준에 따라 시공되며,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은 입주 후 입주자의 주관 하에 설치 및 운영·관리 하여야 함.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대수는 총 228대(아파트 223대, 근린생활시설상가) 4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보육시설)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별로 별도 구역이 되어 있으므로 입주 후 각 시설 입주 대표자의 협의하에 주차장의 구획 및 운영 되어야함.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아랑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험안내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상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카디로그 등의 홍보물에 사용된 단위체에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임의로 가구, 가전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시용검사 포함) 까지	₩ 29,174,233,600	제 01282008-101-0003600호

####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주택무지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1) 보증서는 다음 각호의 10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지가 주택보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택무지가 대물변제, 차령, 이계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2)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보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3)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개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보양계약사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음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4)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서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서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5)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일기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일기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사서에서 정한 납부기간에 납부한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사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증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 보증사고 전에 주택보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지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2) 주택무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사금
-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망선택품목(예시 : 홀도어,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음선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4항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0에 해당하는 잔 고금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사용감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김리회사 및 김리계약금액

구 분	김 리 회 사	김 리 계 약 금 액	사 업 장 소 재 지
건 속 / 설 비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685,755,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20 남서울빌딩 5층
소 방 / 전 기 / 정보통신	나우기술단	₩ 100,000,0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25-22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 시행자 : 동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이수건설㈜ (법인등록번호 : 110111-0202202)
  - 건본주택 및 분양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93-11 ☎ 02)2293-3900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